

『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·개정으로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·운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6조(결손처분)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1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
 - 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 제정(2010.12.31)-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지방세심의 위원회(2010.12.31 구성)의 심의·의결 사항에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,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